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23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정을호·이기헌·김남근

오세희 · 백승아 · 조승래

김준혁 · 김동아 · 차지호

안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,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,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.

그러나, 총장 추천,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, 「교육공무원법」,「고등교육법」,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,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.

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무경영 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,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, 학생, 동문 및 학 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4항,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"사람을"을 "사람,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및학생을"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"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,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"를 "30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 원 정수(定數)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제2항 중 "교직원과"를 "교직원, 학생 및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총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평의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이후 평의원을 선임할 당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, 직원, 조교및 학생 중에서 특정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.
 - ② 평의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4조(재무경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이후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당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학생을 선임하여야 한다.
 - ② 재무경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7조제 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조(총장 등) ① ~ ③ (생 제8조(총장 등) ① ~ ③ (혂행과 략) 같음)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<u>(4)</u> -----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 ----사람. 국립대학법인 명 이내로 구성하되, 구성 및 인천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-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⑤ · ⑥ (생략) (5)·(6) (현행과 같음) 제15조(평의원회) ① (생 략) 제15조(평의원회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평의워회는 국립대학법인 ② -----30명 이내의 평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 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국 로 구성하되, 그 구성에 관한 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,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 직원,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 <u>한다</u>. <<u>후단</u> 신설> 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 는 사람으로 구성하되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 의원 정수(定數)의 3분의 1을

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생 략)